

제2025-95호 2025년 10월 30(목)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5-444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1
○ 여수시 고시	제2025-448호	여수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7
○ 여수시 고시	제2025-449호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8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092호	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9
○ 여수시 공고	제2025-3097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1
○ 여수시 공고	제2025-3104호	도로지정·돌산읍 평사리 140번지	12
○ 여수시 공고	제2025-3114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조정금 부과예정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14
○ 여수시 공고	제2025-3117호	2025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15
○ 여수시 공고	제2025-3124호	「섬섬여수 무료콜 및 바우처택시 운영시스템 구축」 제안서 평가결과	34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의 2, 같은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10. 30.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사업장 일반지정폐기물 매립장 증설, 송전선로 및 진입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주)와이엔텍 대표이사 박지영
 - 나. 주 소: 여수시 여수산단로 1232(월내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 가. 사업의 목적: 사업장 일반지정폐기물 매립장 증설 및 남해화학 154kv 송전선로 이설을 위함
 - 나. 사업의 개요
 - 면 적: 기정) 77,918㎡(일반폐기물 52,714, 지정폐기물 14,319, 전기공급설비 7,905, 진입도로 2,980)
변경) 78,512㎡(일반폐기물 52,714, 지정폐기물 14,319, 전기공급설비 7,905, 진입도로 3,574)
 - 용 량: 일반폐기물 1,223,544㎥, 지정폐기물 196,694㎥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가. 위 치: 여수시 월내동 7-9번지 일원
 - 나. 면 적: 기정) 77,918㎡ 변경) 78,512㎡, 증) 594㎡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2002. 5.30.~2025.6.30. 변경) 2002. 5.30.~2026. 12. 31.

6.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893	8	국지 도로	1,826	대3-26 월내동 426-3도	월내동 200-2전	일반 도로	-	전고-93호 (02.05.30.)	
변경	소로	2	893	8	국지 도로	1,826	대3-26 월내동 426-3도	월내동 200-2전	일반 도로	-	전고-93호 (02.05.30.)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893	소로 2-8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선형변경 - 기정 12,525㎡ - 변경 13,119㎡ 증)594㎡,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여건 및 설계기준 반영을 위한 선형 변경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붙임1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붙임1

○매립장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조서(변경없음)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소유자		비고
					계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주소	소유자	
1	월내동	7-9	잡	1,460	1,460	1,460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2	월내동	31-1	답	119	119	119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3	월내동	31-4	답	233	233	233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4	월내동	35-2	답	63	63	63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5	월내동	37-4	답	79	79	79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6	월내동	37-5	답	188	188	-	188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7	월내동	151	답	1,286	1,286	1,286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8	월내동	152	답	436	436	436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9	월내동	153	답	43	43	43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10	월내동	154	답	440	440	440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11	월내동	155	답	1,038	1,038	248	790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12	월내동	156	답	314	314	154	160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13	월내동	159-1	답	53	53	-	53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14	월내동	163-2	답	793	793	-	793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15	월내동	163-4	답	135	135	-	135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16	월내동	164	답	301	301	301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17	월내동	165	답	327	327	327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18	월내동	166	답	436	436	436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19	월내동	167	답	46	46	46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20	월내동	168	답	1,603	1,603	1,603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21	월내동	169	답	645	645	645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22	월내동	170	답	493	493	493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23	월내동	171	답	417	417	417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24	월내동	172	답	906	906	906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소유자		비고
					계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주소	소유자	
25	월내동	173	임	2,099	2,099	2,099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26	월내동	174	답	291	291	291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27	월내동	175	답	403	403	403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28	월내동	176-1	답	2,976	2,976	2,976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29	월내동	180-6	잡	390	390	390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30	월내동	200-17	전	425	425	425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31	월내동	1351-2	구거	2,467	2,407	2,326	81		국(건설부)	
32	월내동	1353-2	잡	40	40	40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33	월내동	1390	잡	251	251	251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34	월내동	1391-3	잡	304	304	304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35	월내동	산98	임	6,261	5,960	5,257	703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36	월내동	산100	임	2,686	2,671	-	2,671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37	월내동	산100-1	천	65	55	-	55		국(건설부)	
38	월내동	산101	임	11,008	10,987	5,458	5,529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39	월내동	산102	임	1,983	1,983	-	1,983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40	월내동	산103	임	3,174	1,178	-	1,178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41	월내동	산130	임	2,281	2,168	2,168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42	월내동	산131	임	18,138	14,550	14,550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43	월내동	산135-5	임	6,041	6,041	6,041	-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송전선로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조서(변경없음)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소유자		비고
					계	철탑	선하지	주소	소유자	
1	월내동	산133	임	74,944	1,077	64	1,013		여수시	
2	월내동	1420	장	28,450.2	539	64	475		여수시	
3	월내동	198	전	509	55	-	55		여수시	
4	월내동	199	답	2,979	276	-	276		여수시	
5	월내동	1413	장	7,614.8	416	-	416		여수시	
6	월내동	200-18	전	301	39	-	39		여수시	
7	월내동	37	답	1,504	204	-	204		여수시	
8	월내동	1351-3	구	625	44	-	44		국 (건설부)	
9	월내동	43	답	14,800	907	-	907		여수시	
10	월내동	48	답	1,127	258	-	258		여수시	
11	월내동	산114	임	11,504	154	-	154	삼일면 월내리 115	공씨고산파 총회	
12	월내동	산115-1	임	11,603	389	144	245	삼일면 상암리 1174	공씨고산파 총회	
13	월내동	1419	도	2,866.4	354	-	354		여수시	
14	월내동	200-17	전	425	128	-	128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15	월내동	산135-5	임	6,041	118	-	118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16	월내동	산131	임	18,138	941	-	941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17	월내동	1351-2	구	2,467	143	-	143		국 (건설부)	
18	월내동	166	답	436	116	-	116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19	월내동	산101	임	11,008	1,669	604	1,065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20	월내동	168	답	1,603	78	-	78	여수시 월내동 252	(주)와이엔텍	

○진입도로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조서(변경)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소유자	
합계		12개 필지		18,886	2,980			
		13개 필지		21,609	3,574			
1	월내동	산145-1	임	358	358	월내동 252번지	(주)와이엔텍	
2	월내동	196-8	전	579	579	월내동 252번지	(주)와이엔텍	
3	월내동	산152	임	6,942	576	광주광역시 풍암신흥로 54	김미숙 외 2인	기정
		산152	임	6,942	638	광주광역시 풍암신흥로 54	김미숙 외 2인	변경
4	월내동	산146-4	임	120	120	월내동 252번지	(주)와이엔텍	
5	월내동	산146-5	임	403	403	월내동 252번지	(주)와이엔텍	
6	월내동	산133-8	임	98	98	월내동 252번지	(주)와이엔텍	
7	월내동	350-7	장	60	60	월내동 252번지	(주)와이엔텍	
8	월내동	358-2	잡	204	204	월내동 252번지	(주)와이엔텍	
9	월내동	358-3	잡	9	9	월내동 252번지	(주)와이엔텍	
10	월내동	358	잡	1,294	18	월내동 350	오리온엔지니어링 카본즈(주)	기정
		358	잡	1,294	10	월내동 350	오라이온코리아(주)	변경
11	월내동	산145	임	7,477	12	월내동 350	오리온엔지니어링 카본즈(주)	기정
		산145	임	7,477	124	월내동 350	오라이온코리아(주)	변경
12	월내동	200-6	도	1,342	543		여수시	기정
		200-6	도	1,342	929		여수시	변경
13	월내동	196-1	전	2,723	42		여수시	추가

2025년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0. 28.

여 수 시 장

1. 지정일자: 2025. 10. .
2. 대 상 지: 총 4개소(신규지정 3개소, 해지 1개소)
3. 지정사유: 산사태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4. 해제사유 : 해제 평가 기준 항목을 모두 만족하고 안정된 상태로 관리함이 적절한 지역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 10
 - 누구든지 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산림과 (☎061-659-46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25년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 10. 30.
여 수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m ²)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1237	7	국지 도로	175	소로2-539 제도리 76	제도리 73-5	일반 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1237	· 도로(신설) - 위치: 화정면 제도리 73-5번지 - 폭원: 7m, 연장=175m	지역 교통망과 연계된 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통한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도면: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

우리 시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폐목(바지선)으로 인하여 미관 저해, 선박 정박 및 항해시 안전 위험, 해양오염 발생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여수시 해양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8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5. 10. 28. ~ 11. 17.
2.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제원 : 바지선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 등(폐자재 및 그 밖의 물건)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 공유수면관리팀(☎061-659-3971)로 연락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여수시 공고 제2025-3092호			
무 단 방 치 물(바지선)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여수시 가막만 및 화정면 일대(해양경찰서에서 순찰 중 발견) - 현위치 : 여수시 신월동 120-46 인근 공유수면		
물 건 제 원	바지선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5-9호
제거 예정일자	2025년 11월 17일 이후 (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현위치(신월동 120-46 인근 공유수면)		현장사진	
<p>위 방치물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 미관 저해, 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u>2025년 11월 17일(월)</u>까지 여수시 해양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10월 28일</p> <p style="text-align: center;">여 수 시 장</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 : 해양정책과 061-659-3971)</p>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여 수 시 장

1. 제 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28.(화) ~ 2025. 11. 11.(화) (14일간)
3. 근거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제82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종	업 소 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위반사항	송달불능사유
주유소	믿음주유소	김*연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로 26	재난배상책임 보험 미가입	우편반송 및 폐문부재

5. 고지사항
 - 위 공고 대상자는 납기일자 내에 여수시 신산업에너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추후 재산압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처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여수시 신산업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061-659-3612)

[여수시 공고 제2025-3104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33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5. 10. 28.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40번지
2. 도로면적 : 110m²
3. 도로길이 : 14m
4. 도 로 폭 : 6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298	110	
돌산읍 평사리	140	잡종지	298	110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위 치 도



현 황 도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구(화양읍적, 가장)의 면적 증가한 토지에 부과한 조정금이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체납되어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에 따라 체납 조정금 부과 예정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4명
2. 공고기간: 2025. 10. 29. ~ 2025. 11. 12.(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 및 화양면, 율촌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조정금 부과 예정 알림
5.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40, 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2025. 10. 29.

여 수 시 장

2025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기선정자 지원금 신청 및 신규 대상자 모집 공고

여수시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020~2024년 기선정자 지원금 지급 신청 안내 및 2025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0월 30일

여 수 시 장

I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5. 10. ~ 12.
- 사업명 : 2025년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사업량 : 500가구 내외(기 선정 350, 신규 선정 150)
※ '25년 신규 지원 사업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 820백만원(시비 100%)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8~45세로 전세대출을 받아 여수시 거주(예정)중이면서 아래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 생애 1회
- 지원내용 및 지원 기간

2020~2022 기선정	2023~2024 기선정	2025 신규선정
대출 잔액 기준 월정액 최대 15만원 (~5천만원) 50천원 (5천만원~1억원) 100천원 (1억원~) 150천원	실제 이자납부액 기준 월 최대 15만원	본인의무부담금리 최소 연 1.0%이상 범위 내 실제 이자납부액 기준 월 최대 30만원
최대 36개월	최대 60개월	최대 60개월

※ 기 선정자 중 지원중단 되었다가 재신청을 한 자는 재신청 당시 공고에 따름

II 신청 대상

1. [2020~2024년 선정자] 지원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 자격 유지

내 용	비 고(기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 중 한명이라도 여수시 외의 주소로 이전(전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분양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계약 완료 달까지 지급 주택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달까지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가 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밖에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 전액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신청 서류가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 기타 환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신청자 중 지원 중단 등의 사유로 연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재신청을 원하는 자는 2025년 신규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2025 신규 지원자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지원 기간 및 금액은 2025년 신규 신청 기준 잔여 개월 및 금액으로 함.

2. [2025년 신규 지원자]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구원: 본인, 배우자, 자녀

-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시 해당 주택이거나 타시군구에서 3개월 이내 여수시 해당 주택 전입 예정자
- (주택기준)
-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 자녀 2명 이상 가정의 경우 면적 제한 없음)
 - 임대차계약서 상 전세 계약 시작일 2024. 1. 1. ~ 2025. 10. 30. 사이

○ (무 주 택)

- 신청일 기준 가구원* 모두 전국 무주택(분양권 포함)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으로 대출 심사가 완료되었더라도, 본 사업의 무주택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예) 집 3개월 이내 매도하기로 하고, 대출 완료 받은 경우 신청일 기준 1주택이므로 대상자 아님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었다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⑧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 상품의 대출을 받아 아래의 대상 자격을 충족하는 18~45세

* 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금융거래확인서 상 대출 실행일이 2024. 1. 1. ~ 2025. 10. 30. 사이

구 분		대 상 자 격	
기혼 청년 (100명)	무 자녀 (50명)	신혼부부 (최대 20만원/ 2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신고일 7년 이내(2018. 1. 1.이후)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 (최대 20만원/ 2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 ▶ 예비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유 자녀 (50명)	한자녀가정 (최대 23만원/ 3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 *혼인기간 제한 없음 ⇒ 기본 + 아이키움 우대(월 3만 원)
		다자녀가정 (최대 30만원/ 60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혼인기간, 주택면적제한 없음 ⇒ 기본 + 아이키움 우대(2명: 6만, 3명이상: 10만)
		한부모가정 (최대 30만원/ 60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명 이상 주택면적제한 없음 ▶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법정 이혼 한쪽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 ⇒ 기본 + 아이키움 우대(1명3만 2명 6만 3명이상 10만)
	미혼 청년 (50명)	취업준비생 (최대 20만원/ 2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업자: 부모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 미취업자는 한 번도 취업 경험이 없는 자를 의미함 ▶ 단기근로자: 본인 연 소득 1,500만원 이하 - 단기근로자는 12개월 미만 비정규직을 의미함
사회초년생 (최대 20만원/ 2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기간이 5년 미만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독신근로자 (최대 20만원/ 2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기간이 5년 이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각 조건 별로 배점표(붙임 참고)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 해당 조건의 신청자 미달 시 예산의 범위 하에서 신청자 초과 된 조건의 가구 추가 선정

3. 지원 제외 대상

- 가. 신청자, 배우자, 자녀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자(분양권 포함)
- 나.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관련 공공지원 주택 사업 대상자
 - 국민(영구)임대, LH매입(전세)임대, 행복 주택, 전세 임대 주택,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회주택, 공공지원 임대주택 등
- 마. 국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보건복지부 주거지원사업, 전남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전라남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등
- 바.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Ⅲ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및 방법

- 가. 신청기간 : 2025. 11. 3.(월) ~ 11. 28.(금) / 26일간
- 나. 신청자 : 주택계약자 본인(혹은 배우자) 직접 신청이 원칙
 - 배우자 방문 시 주택계약자 신분증 및 배우자 신분증 각각 구비 후 내방
 - 주택 계약자 본인(혹은 배우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및 위임 관련 서류 제출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①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②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 '일반용'

다. 접수처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라. 신청방법 :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우편, 팩스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붙임 참고

2. 지원내용

2020~2022 기선정	2023~2024 기선정	2025 신규선정
대출 잔액 기준 월정액 최대 15만원 (~5천만원) 50천원 (5천만원~1억원) 100천원 (1억원~) 150천원	실제 이자납부액 기준 월 최대 15만원	본인의무부담금리 최소 연 1.0%이상 범위 내 실제 이자납부액 기준 월 최대 30만원 (기본20만원+아이키움우대)
최대 36개월	최대 60개월	최대 60개월 (기본24개월+아이키움우대)

가. 2020~2024기선정자: **최초 선정 당시 공고에 따른 지급**

- 지원중단 되었다가 재신청을 한 자는 재신청 당시 공고에 따름

나. 2025 신규선정자

- **본인 의무 부담 금리 최소 연 1.0% 이상 범위 내 실제 이자 납부액 기준
기본 월 최대 20만원 + 자녀 1명 3만원, 2명 6만원, 3명이상 10만원**

$$\text{월지원액} = \min\left(\frac{\text{대출금액} * (\text{실제연이자율} - \text{본인최소부담연이자율})}{12}, \text{자격별월최대지원한도}\right)$$

(예1) 대출금 2억원, 대출기간 24개월, 연 이자율 2.5%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 실제 이자 납부액 연 2.5%(월 416,667원) 중 최소 본인 의무 부담 금리 1%(월166,667원)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24개월 월 200,000원 지원

(예2) 대출금 7천만원, 대출기간 24개월, 연 이자율 2.8% 대출을 받은 사회초년생

→ 실제 이자 납부액 연 2.8%(월 163,333원) 중 최소 본인 의무 부담 금리 1%(월58,333원)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24개월 월 105,000원 지원

- **최대 60개월** (기본 24개월 + 자녀 수 별 최대 12 ~ 36개월)

- 생애 1회 (지원 중단 시 재신청 불가)

3.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직인 날인 필수) (열람용 금지)

○ 2025년 신규 신청자 제출서류 (자격 조건 별 구비 서류 상이하니 8쪽 확인)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서식 1】 -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 신분증 지참(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3】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생략 가능 - (등본) 신청자 기준 1부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전부공개 - (초본) 세대구성원 기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 - 주민등록상 주소가 가족구성원 모두 여수시 해당주택이어야 함.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 타시군구에서 해당 주택으로 전입 예정인 경우 전입신고 후 등/초본 제출 후 추가 제출 필요 (3개월 이내 미 전입신고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7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8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말소사항 포함
9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 금융권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 (금융기관 직인 날인 필수) - 대출상품명, 대출기간, 인적사항, 대출용도(주택, 임차, 전세),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2025년도 대출이자 납부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0	소득증빙서류 1부 (지원조건별 발급 대상 상이) - 대상년도 : 2024년 - 소득 有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無 : 국세청 사실증명서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11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주택) 과세증명서 1부 (지원조건별 발급 대상 상이) - 대상기간 : 2024~2025년/ 대상지 : 전국/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 취득세 과세내역 - 과세사실 없을 경우에도 미과세 증명 제출 필요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터넷 발급시 주소지 관할 내역만 발급됨 *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12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1부 (지원조건별 발급 대상 상이)
13	위임장 【서식 4】 제출 -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조건 별 구비 서류>

	기혼청년(100명)					미혼청년(50명)		
	무자녀(50명)		유자녀(50명)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독신 근로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1 신청서	○	○	○	○	○	○	○	○
2 동의서	○	○	○	○	○	○	○	○
3 통장	○	○	○	○	○	○	○	○
4 등·초본 (등본) 신청자 1부 (초본) 구성원 각1부	○	○	○	○	○	○	○	○
5 혼인	○	추후 제출			○	○	○	○
6 가족	○ 부부 각 1부	○ 부부 각 1부	○ 부부 각 1부	○ 부부 각 1부	○	○	○	○
7 임대차	○	○	○	○	○	○	○	○
8 등기부	○	○	○	○	○	○	○	○
9 대출	○	○	○	○	○	○	○	○
10 소득	○ 부부 각 1부	○ 부부 각 1부	○ 부부 각 1부	○ 부부 각 1부	○ 신청자 1부	○ 미취업자 (본인) 사실증명원 (부모) 소득금액 증명원 ○ 단기근로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단기근로 증빙서류	○ 신청자 1부	○ 신청자 1부
11 지방세	○ 부부 각 1부	○ 부부 각 1부	○ 부부, 자녀 각 1부	○ 부부, 자녀 각 1부	○ 신청자, 자녀 각 1부	○ 신청자 1부	○ 신청자 1부	○ 신청자 1부
12 청약	○ 부부 각 1부	○ 부부 각 1부	○ 부부, 자녀 각 1부	○ 부부, 자녀 각 1부	○ 신청자, 자녀 각 1부	○ 신청자 1부	○ 신청자 1부	○ 신청자 1부
추가		청첩장 혹은 예식장 계약서 등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부모 각 1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2020~2024년 선정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직인 날인 필수)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서식 2】 -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 신분증 지참(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3】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시 생략 가능 - (등본) 신청자 기준 1부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전부공개 - (초본) 세대구성원 기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 - 주민등록상 주소가 가족구성원 모두 여수시 해당주택이어야 함.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7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8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말소사항 포함
9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 금융권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 (금융기관 직인 날인 필수) - <u>대출상품명, 대출기간, 인적사항, 대출용도(주택, 임차, 전세),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u> - 2025년도 대출이자 납부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0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주택) 과세증명서 1부 (지원조건별 발급 대상 상이) - 대상기간 : 2024~2025년 / 대상지 : 전국 /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 취득세 과세내역 - 과세사실 없을 경우에도 미과세 증명 제출 필요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터넷 발급시 주소지 관할 내역만 발급됨 *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11	위임장 【서식 4】 제출 -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IV 향후 일정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및 대상자 확정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25. 11. 3.(월) ~ 11. 28.(금)	'25. 12. 22.(월)까지	'25 12. 22.(월)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 확인 ▶ 신청자가 예산초과 할 경우 각 조건별로 배점표(붙임)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통보방법: 개별 통보(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개별 지급 신청 계좌 입금 ▶ 기 선정자의 경우 2024년 12월 분 이자를 지원받지 못한 가구 이자납입 내역 첨부하여 추가지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V 기타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 제외대상으로 확인될 때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4.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 신규 신청자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061-659-3426)

신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혼부부 <input type="checkbox"/> 예비신혼부부 <input type="checkbox"/> 한자녀가정 <input type="checkbox"/> 다자녀가정(자녀_명)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취업준비생 <input type="checkbox"/> 사회초년생 <input type="checkbox"/> 독신근로자								
인적 사항	신 청 자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연소득(합산)	금 원				
	여수시 전입일자	년 월 일 (신청자 기준)							
주택전 세계 약 현황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소재지 (주 소)			임차면적	m ²				
	주택형태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원룸,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출 현황	대출기관								
	대출상품명								
	대출금액	금 원	대출잔액	금 원					
	대출기간	20 . . . ~ 20 . . .							
	월 이 자 납부액	1월	원	2월	원	3월	원	4월	원
		5월	원	6월	원	7월	원	8월	원
		9월	원	10월	원	11월	원		
청구기간	총 개월 분(2025년 실제 납부 개월 수)								
지원금 지급 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청구금액	2025년 실제 총 본인의무부담금리 최소% 이상 범위 내 실제 이자 납부액(조건별한도상) 원							
<p>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과 신청제의 대상 및 해제사유 해당시 환수 조치됨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2025년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11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p> <p>여수시장 귀하</p>									

【서식 2】 - 기 선정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최초 신청:202_년)

성 명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신청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주택 전세 대출이자 납부현황

대 출 기 간	20 . . ~ 20 . . (개월)			
납 부 기 간	20 . . ~ 20 . . (개월)			
대 출 잔 액	금 원			
월 이 자 납 부 액	1월	원	2월	원
	3월	원	4월	원
	5월	원	6월	원
	7월	원	8월	원
	9월	원	10월	원
	11월	원		
청 구 금 액	금 원			

※ (2020~2022년) 대출 잔액 기준 구간별 월 정액 최대 15만원 * 최대 36개월
 (2023~2024년) 실제 이자 납부액 기준 월 최대 15만원 * 최대 60개월

지원금 지급받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2025년 11월 일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전화번호, 가족사항, 소유 재산 및 소득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공개)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신청자의 가족사항 및 구성원 주민등록,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의 가족사항 및 구성원 주소,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의 명칭 : 여수시
 - 이용사무(이용목적) : 현주소, 재산세 과세증명(여수시), 주민등록등본 등 전산 조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산세 과세증명(여수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기간 : 자격요건 확인 시까지
- ※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전산 조회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번호(본인) : -

* 주민등록번호(배우자)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11월 일

신청자(본인) (서명 또는 인)

신청자(배우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4】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 과 의 관 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 과 의 관 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①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②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 용도는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 으로 기재

2025년 11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참고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2024년 기준 소득 금액 합산 (기혼청년-부부합산, 미혼청년-신청자)	가. 3천만원 미만	8점
	나.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6점
	다.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4점
	라. 5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2점
	마. 6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1점
	바. 8천만원 이상	0점
②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민법상 미성년 자녀의 수	가. 3인 이상	6점
	나. 2인	5점
	다. 1인	3점
	라. 해당없음	0점
③ 신청인 기준 여수시 연속 거주 기간	가. 8년 이상	5점
	나. 5년 이상 ~ 8년 미만	4점
	다. 3년 이상 ~ 5년 미만	3점
	라. 1년 이상 ~ 3년 미만	2점
	마. 1년 미만	1점
④ 신청인 기준 사회적 배려 사항 (관련 증빙 서류 첨부)	『장애인,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기초 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가. 해당시 나. 해당없음	1점 0점
총 점		

※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총 점이 동일시 기준 소득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Q1 기 신청자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기 신청자의 경우 고시공고문 2쪽의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 자격이 유지되며, 2025년도부터 확대되는 기준이 아닌 당초 모집 당시 공고 기준에 따른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시 공고 기준에 따른 잔여개월 수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2025 기선정자 지원금 지원 가능하며, 지원이 끝난 경우 2025 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생애 1회)

(2020~2022년) 대출 잔액 기준 월 정액 최대 15만원 * 최대 36개월

(2023~2024년) 실제 이자 납부액 기준 월 최대 15만원 * 최대 60개월

Q2 기 신청자였는데 자격 요건이 2025 기준으로 변동되었어요.

☞ 최초 선정 당시 신혼부부였으나 현재 자녀가정으로 바뀐 경우 등 자격 요건이 변동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잔여 개월 수에 한하여 2025 신규 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 금액 및 지원기간은 2025 신규 대상자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2020~2022 선정자	2023~2024 선정자	2025 신규 대상자
한자녀	월 최대 15만원/36개월	월 최대 15만원/60개월	월 최대 23만원/36개월
두자녀	월 최대 15만원/36개월	월 최대 15만원/60개월	월 최대 26만원/48개월
세자녀 이상	월 최대 15만원/36개월	월 최대 15만원/60개월	월 최대 30만원/60개월

※ 위 표는 참고용으로 구체적인 실제 지급액은 공고문 6쪽 참고

따라서 자격 요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기존 선정 자격을 유지하거나,

2025 신규 신청으로 전환할지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후에는 번복할 수 없으며 자격 요건 변경 신청에 따른 불이익이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때 지원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2025년 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생애 1회)

Q3 기존 집 전세계약이 만료(예정)되어 새로 전세 대출을 받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지원은 잔여기간에 따라 기존 및 신규 대출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계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규 대출시행일 기준으로 신규 대출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신청자는 상기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 기존 전세계약 시작일과 대출 실행일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0일 사이에 해당하면 기존 및 신규 대출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단, 신규 신청자의 기존 주택의 계약조건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 주택에 대한 지원만 가능합니다.

Q4 선착순 마감인가요? 선정 후 언제쯤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 선착순이 아닌 접수기간 마감 후 최종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예산 범위 내 우선 배점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12월 중 선정 결과 개별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예정입니다.

Q5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이상’ 이 무슨 뜻인가요?

☞ 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시에서 전액을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연 1.0% 이상의 이자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3.5%라면 그 중 1.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일부를 시에서 이자지원 형태로 보전합니다.

(예1) 대출금 2억원, 대출기간 24개월, 연 이자율 2.5%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 실제 이자 납부액 연 2.5%(월 416,667원) 중 최소 본인 의무 부담 금리 1%(월166,667원)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24개월 월 200,000원 지원

(예2) 대출금 7천만원, 대출기간 24개월, 연 이자율 2.8% 대출을 받은 사회초년생

→ 실제 이자 납부액 연 2.8%(월 163,333원) 중 최소 본인 의무 부담 금리 1%(월58,333원)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24개월 월 105,000원 지원

Q6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더욱 확대된 조건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 신혼부부이면서 다자녀가정: 다자녀가정으로 신청

Q7 2024. 1. 1. 이전에 시행한 대출이거나 이전에 전세 계약이 시작된 집을 재연장해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전세계약이 시작되었거나 해당 일자 이전에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된 경우, 또는 기존 전세계약을 단순 연장하여 거주 중인 경우에는 이자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5년 신규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0일 사이에 시작된 전세계약 및 실행된 전세자금대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Q8 자녀가 중간에 태어나거나 가족관계에 새로 추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원 기간 중 자녀(태아는 포함 안됨)가 추가될 경우, 등록 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자녀 수 기준으로 추가 지원금이 반영됩니다. 기 선정자의 경우 Q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9 타시군구에서 전입 예정인데, 주민등록이 아직 여수시가 아닙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2025년 신규대상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전입 이후 등본 및 초본을 추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 지급받은 지원금이 있는 경우 전액 환수조치됩니다.

Q10 예비 신혼부부인데, 혼인신고 전이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 2025년 신규대상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 혼인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신청 시 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예비 신혼부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혼인신고 이후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 지급받은 지원금이 있는 경우 전액 환수조치됩니다.

「섬섬여수 무료콜 및 바우처택시 운영시스템 구축」 제안서 평가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섬섬여수 무료콜 및 바우처택시 운영시스템 구축」 제안서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평가개요

- 사 업 명 : 섬섬여수 무료콜 및 바우처택시 운영시스템 구축
- 평가일시 : 2025. 10. 27.(월) 14:00 / 10. 29.(화)
- 평가장소 : 여순 10·19사건 역사관 / 서면
- 평가위원 명단(가나다순) : 9명
 - 문영진, 문창희, 박용건, 이옥현, 정남철, 진명숙, 최기성, 최종배, 황대환

□ 심사점수 - 정성적 평가(70점)

평가위원명	평 점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평가위원 1	52	54	54	67
평가위원 2	61	58	54	57
평가위원 3	65	48	44	52
평가위원 4	48	58	39	65
평가위원 5	53	60	55	32
평가위원 6	66	58	51	69
평가위원 7	70	37	34	34
평가위원 8	28	28	52	62
평가위원 9	70	14	26	16

※ 평가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위원 명단순서(가나다순)와 평가결과 위원명 순서는 무관함